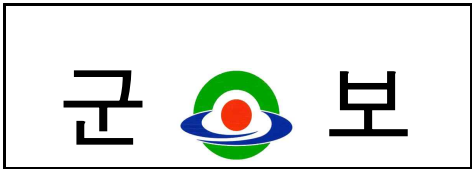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29호 2024. 5. 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86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위임업무 삭제(안 별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 의회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2023.12.28.)
→ 새마을소득사업 용자대상자 조사, 추천 등 권한

※ 용자금 회수 및 독촉 권한 위임은 존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만료(2022.2.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보증인 위·해촉 등 권한

○ 용어 정비(안 별표)

- 재무분야 :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 공사집행 →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 공사집행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총 무 분 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제21조	읍면
	2.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	1. 직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읍면
재 무 분 야	1. 군수입증지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증지의 사용	예천군수입증지조례 제4조	읍면
	2. 지방세기본법 중 다음의 권한	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읍면
	3.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	1.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지방세법 106조	읍면
		2. 토지현황 조사	지방세법 제106조	읍면
	4.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 반환결정	지방회계법 제20조, 지방회계법 제28조	읍면
	5. 지방회계법 중 다음의 권한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지방회계법 제29조	읍면
		2.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 검사	지방회계법 제29조	읍면
	6. 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1. 불용품 매각처리	예천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지 역 제 분	1.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와 사용제한 2. 사용료부과·반환·감면 3. 사용자에 대한 설비 복구 및 기타사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같은 조례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2. 군 새마을 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융자금회수 및 독촉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조례 제2602호) 부칙 제2조	읍면
주 민 복 지 분 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구호환자, 진료신청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읍면
		2. 수급자 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읍면
		3. 급여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읍면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2.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읍면
		3.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읍면
환 경 관 리 분 야	3. 기초연금법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1.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읍면
	1.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발생억제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4조	읍면
		2.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6조	읍면
		3.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같은 법 제8조제1항	읍면
		4. 생활폐기물 청결유지 명령	같은 법 제8조제3항	읍면
		5.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8조	읍면
	2.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폐쇄승인 신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산 립 녹 지 분 야	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	읍면
건 설 교 통 분 야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66조, 제68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읍면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20조	읍면
	3.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처리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읍면 (예천읍 제외)
		2. 번호판 부착과 봉인	같은 법 제49조	읍면 (예천읍 제외)
		3.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 (예천읍 제외)
		4.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 (예천읍 제외)
		5. 이륜자동차의 과태료 처분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읍면 (예천읍 제외)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건 축 분 야	1.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	1.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	건축법 제14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읍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5조의2	읍
		3. 공작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읍
도 시 분 야	1.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66조, 제68조	읍면
		3.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읍면
안 전 재 난 분 야	1. 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읍면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22조	읍면
하수도 분 야	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지도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읍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